

#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A Type



순번	법 조 항	주 요 내 용	벌 칙
1	제15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]	• (해당시)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	제16조 [관리감독자]	•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-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안전·보건점검, 작업복·보호구·방호장치의 착용·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3	제17조 [안전관리자] 제18조 [보건관리자] 제19조 [안전보건관리담당자]	•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 • 사업의 종류,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4	제24조 [산업안전보건위원회]	• (해당시)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5	제25조 [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]	• (해당시)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6	제29조 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]	• 정기교육 : 사무직 외 (매분기 6시간 이상), 사무직(매분기 3시간 이상), 관리감독자(연간 16시간 이상) • 채용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외 (8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(1시간 이상) 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외 (2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 (1시간 이상) • 특별교육 (밀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) : 일용근로자 외 (16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 (2시간 이상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7	제34조 [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]	•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8	제36조 [위험성평가의 실시]	•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 보존 (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: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37조 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]	•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-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0	제38조 [안전조치]	•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기계·기구, 기타 설비,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 물질 및 전기·열·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- 굴착·채석·하역·벌목·운송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- 추락·붕괴·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1	제39조 [보건조치]	•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흄·미스트·산소결핍·병원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- 사업장 배출 기체·액체 또는 찌꺼기, 계측감시, 정밀공작,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-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, 환기·채광·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2	제54조 [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]	•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·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	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3	제57조 [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]	•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, 그 발생원인 등 기록·보존 •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 제출 포함)	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4	제63조 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]	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(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)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5	제80조 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]	•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- 예초기,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금속절단기, 지게차, 포장기계(진공포장기), 랩핑기 한정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16	제84조 [안전인증] 제87조 [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]	• 유해·위험기계류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·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-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, 보호구 등 •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17	제93조 [안전검사]	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-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8	제114조 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	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9	제115조 [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]	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- 명칭, 그림문자, 신호어, 유해위험 문구, 예방조치 문구, 공급자 정보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0	제118조 [유해·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]	•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- α-나프틸아민 및 그 염, 디아니신딘 및 그 염, 베릴륨, 벤조트리클로라이드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- 염화비닐, 콜타르피치, 크롬광 가공, 크롬산 아연, o-나톨리딘, 황화니켈류 등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21	제119조 [석면조사] 제122조 [석면해체, 제거]	• 건축물·설비의 철거·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·보존 • 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준 준수 • 건축물·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·제거 실시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22	제125조 [작업환경측정]	•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 -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, 소음(80dB 이상)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, 분진의 유해인자 -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3	제129조 [일반건강진단]	• 상시 근로자 대상 :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(2년 1회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1년1회 이상)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4	제130조 [특수건강진단 등]	•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-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,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, 야간작업 •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시 또는 작업전환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5	제164조 [서류의 보존]	•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선임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(2년), 안전·보건조치에 관한사항,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,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